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8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박준태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장동혁

강대식 • 구자근 • 고동진

주호영 · 강선영 · 윤재옥
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 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 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	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	
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	
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	
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	
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	
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	
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	
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	
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	
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	
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	
액을 공제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제금액	2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	가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	
00부의 1(주겨기었으 100	

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- 1) (생략)
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(생략)

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1) (현행과 같음)
2)
2)
0,001 10 0 01 01
<u>2028년 12월 31일</u>
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